

2026년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모집 공고

청주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·생활 균형 등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지역 내 우수 기업을 선정·발굴하여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「2026년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모집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0일

청 주 시 장

□ 공모개요
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6. 4. 10.(금) ~ 5. 7.(목) (28일간)
- 기업현장실사 및 심의·선정 : 2026. 5. 8.(금) ~ 6. 15.(월)
- 선정규모 : 8개 내외 기업
- 응모대상 : 청주시 관내 근로자 5인 이상 ~ 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%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
 - ※ 기업별 현장실사 협조 必
 - ※ 가족친화인증기업(과거 인증기업 포함) 제외
 - ※ 최근 3년 간 기업환경개선(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) 관련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, 당해 연도 중복 지원 불가

□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

- 여성친화인증기업 현판 제공 및 기업홍보
- 기업환경개선금 지원(성별분리 화장실 및 휴게실(탈의실), 여성 근로자를 위한 물품구입 등 환경 개선)
 - 지원규모 : 기업별 2,000~3,000천원 정도(자부담 20% 이상 必)
 - 물품구입은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내역에 한함
-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및 폭력예방 교육(맞춤형 컨설팅)
-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연계
-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5점 부여
-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4점 부여
-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 부여
- 우수기업인 표창 시 추천(여성친화기업)

□ 인증기준 및 선정방법

- 인증기준

구 분	기준 점수		
	신규인증	재인증	재인증 연장
현장실사 및 면담(100점)	60점	65점	70점
현장실사보고서(50점)	30점	35점	40점
적용기준	기준 점수 이상 획득 기업만 심의위원회 상정하여 고득점 순 선정		

- 단, 재인증 및 재인증 연장기업은 전체 선정 기업의 30% 이하 선정
- 신청 기업이 8개 미만일 경우 신규인증과 동일한 기준점수 적용
- 5인 이상 ~ 30인 미만 기업과 30인 이상 ~ 300인 미만 기업의 신청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
- 여성친화일촌기업(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) 가점(5점) 부여

○ 선정방법

-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득점 기업 순 선정
- 기업 현장실사 및 면담점수, 실사보고서 점수 고려 예정

□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 4. 10.(금) 09:00 ~ 5. 7.(목) 18:00까지
- 접수처 : 청주시 여성가족과
- 신청방법 : 우편 및 방문, E-mail 접수(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)
 - (방 문) 청주시 여성가족과, 평일 09:00~18:00 ※ 점심시간 제외
※ 주소 :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본관 2층
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
 - (메 일) hana0707@korea.kr (메일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연락 必)
 - (우 편)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, 문화제조창 본관 2층,
여성가족과 여성친화기업 담당자 앞(우28501)
 - (연락처) ☎ [043-201-1754](tel:043-201-1754) / FAX 043-201-1779

□ 제출서류

-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.
-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기타 증빙자료 사본.
 - ※ 신청서류 양식 : 시 누리집(<http://www.cheongju.go.kr>) 공고문에서 다운로드

□ 선정 결과 발표 및 추진

- 결과발표 : 2026. 6월 중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
- 환경개선금 사용·정산 : 보탬e 시스템(www.losims.go.kr) 사용
 - ※ 온라인 정산 등 보탬e 시스템 사용 가능 기업(예외 없음)

□ 기타

-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 불가
- 최근 3년 간 기업환경개선 관련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,
당해 연도 중복 지원 불가
-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 환수